

91300 불량식재지반처리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식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식재에 적합한 지반으로 조성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쓰레기 매립지반 처리
2. 임해 매립지반 처리
3.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 처리
4. 저습지 매립지반 처리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42110 하수관 부설 및 접합

1.2.2 91200 식재지반조성

1.2.3 91700 지하배수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F 4409 - 97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2. KSM 3404 - 96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3. KSM 3509 - 88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 시방에 따른다.

1.4.1 견본

수급인은 제출건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출량 항목의 가감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배수관:
2. 유공관:
3. 합성차수막:
4. 폴리에틸렌 필름:
5. 제염재:
6. 토양개량재 등:

1.4.2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7 제품자료"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목록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4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환경 요구사항

- 1.5.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 1.5.2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리원과 작업진행에 대해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1. 배수관

"42110 하수관 부설 및 접합" 절의 "재료" 에 따른다.

2. 유공관

"91700 지하배수" 절의 "재료" 에 따른다.

3. 합성차수막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4. 폴리에틸렌 필름

『KSM 3509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5. 제염재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토양개량재

"91400 인공식재지반 조성" 절의 "재료" 에 따른다.

7. 비료

"93100 수목이식" 절의 "재료" 에 따른다

8. 기타자재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2.2 대체자재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아래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3.1.1 쓰레기 매립지반처리

3.1.2 임해 매립지반 처리

3.1.3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 처리

3.1.4 저습지 매립지반 처리

3.2 현장품질관리

3.2.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